

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	3일
구분		승계 전		승계 후	
영업자	성명				
	주소				
	전화번호				
영업소	명칭				
	소재지				
	전화번호				
허가번호			영업의 종류		
승계발생사유					

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특별시장·통합특별시장·광역시장·
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귀하

구 비 서 류	신고인(대표자) 제출서류	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수수료
	1. 이송업자가 사망한 경우: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2. 영업 양도·양수의 경우: 다음 각 목의 서류 가. 양도계약서 사본 1부 나.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「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(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) 3. 법인인 이송업자의 합병의 경우: 합병계약서 사본 1부 4.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: 경락확인서 등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	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이송업자의 합병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	없음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※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(대표자) (서명 또는 인)